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1-9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10년도 우편물 송달기준이행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. 2. 14.

우정사업본부장

2010년도 우편물 송달기준이행률

○ 지역별 송달기준이행률

구 분	평균	동일시·군·구	동 일 시 · 도	타시도
보통우편	99.50%	99.74%	99.20%	99.55%